

通常給付 記入例

통상급부 · 기입례

굵은 선 테두리 안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이 신청서를 쓴 날짜를 기입

第1号様式の1 高校生等奨学給付金受給申請書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 수급 신청서

가나가와현립학교인 경우 2023年7月10日
상기 이외인 경우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의 수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保護者等)	氏名	かながわ いくお 神奈川 育夫	高校生等との関係	<input checked="" type="checkbox"/> 親権者(父) <input type="checkbox"/> 親権者(母) <input type="checkbox"/> 未成年後見人 <input type="checkbox"/> 未成年後見人である里親 <input type="checkbox"/> 主たる生計維持者 <input type="checkbox"/> 生徒本人 <input type="checkbox"/> その他()
	住所	〒221-0057 横浜市神奈川区青木町〇〇-〇〇-〇〇	日中連絡が取れる電話番号	090 - xxxx - xxxxx
申請者以外の保護者等	氏名	かながわ たかこ 神奈川 高子	高校生等との関係	<input type="checkbox"/> 親権者(父) <input type="checkbox"/> 親権者(母) <input type="checkbox"/> 未成年後見人 <input type="checkbox"/> 未成年後見人である里親 <input type="checkbox"/> その他()
	住所	〒1月1日現在、상기와 다른 시정촌에 주소지가 있었던 경우는 우측란도 기입하십시오.	1月1日現在の住所	神奈川県 川崎市 <input type="checkbox"/> 日本国内に 주소지가 없다.

非課税世帯 → 【1】 ~ 【5】를記入してください.
비과세 세대 【1】 ~ 【5】를 기입하십시오.

生活保護受給世帯 → 【1】 【3】 【4】 【5】를記入してください. (【2】는記入不要)
생활보호 수급 세대 【1】 【3】 【4】 【5】를 기입하십시오. (【2】는 기입할 필요 없음)

【1】対象となる高校生等について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에 대하여】

氏名	かながわ きょうすけ 神奈川 京介	昭和 19年 5月 5日 平成
在学する学校	(国公立) 神奈川県立 〇〇高等 学校 1年 課程 <input checked="" type="checkbox"/> 全日制 <input type="checkbox"/> 定時制 <input type="checkbox"/> 通信制 <input type="checkbox"/> 専攻科 在学期間 令和5年 4月 1日 ~ 年 月 日	학생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입
過去の高等学校等における在学期間	学校名 立 平成 年 月 日 ~ 平成 年 月 日 学校の種類・課程 在学中に給付金を受給した回数 学校名 立 平成 年 月 日 ~ 平成 年 月 日 学校の種類・課程 在学中に給付金を受給した回数 学校名 立 平成 年 月 日 ~ 平成 年 月 日 学校の種類・課程 在学中に給付金を受給した回数	2023년 7월 1일에 재학하고 있는(있던) 학교에 대해 기입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상기 이외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던 경우에 기입

【2】扶養親族等の状況について ※ 非課税世帯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부양 친족 등의 상황에 대하여】 ※ 비과세 세대만 기입해 주십시오.

続柄	氏名	生年月日	職業・学校名・学年等	課程	給付金の申請の有無	備考
【고등학생 등】 ※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 이외의 고등학생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기입하십시오.						
姉	神奈川 英子	H17.12.12	神奈川県立 〇〇高等学校 3年	<input type="checkbox"/> 通信制 <input type="checkbox"/> 専攻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上記以外	<input checked=""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無	
【상기 이외의 형제자매】 해당 세대에 7월 1일 현재※, 고등학생 등 이외에 15세(중학생은 제외) 이상 23세 미만의 부양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기입하십시오. ※신입생 대상 일부 조기급부의 첫 번째 신청은 4월 1일 현재						
兄	神奈川 学	H13.8.8	無職			
兄	神奈川 教夫	H14.9.9	〇〇〇〇大学 3年			

<비과세 세대인 경우> 부양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 및 15세 이상 23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대해 기입하십시오.
<생활보호(생업부조) 수급 세대인 경우>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3】振込先口座
金融機関名 〇〇 銀行 信用金庫
金融機関コード 1 2 3 4 信用組合・農協

口座番号 1 2 3 4 5 6 7
口座名義人(申請者) ※カタカナで記入してください
かながわ いくお

신청자 명의의 입금 계좌를 기입

【4】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ついて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대하여】

(1)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①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명서)

생활보호(생업부조) 수급 세대인 경우는 체크

(2) 대상자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했습니다.)

과세 증명서 등으로 수입 상황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는 이쪽에 체크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했습니다.)

비과세 세대인 경우는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① **친권자(부모) 2명분** (단신 부임의 경우라도 친권자 2명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이 미성년(18세 미만)이고 친권자(부모)가 두 명 존재하는 경우

개인번호로 수입 상황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는 이쪽에 체크

② **친권자 1명분** (친권자가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인 경우는 그 사람은 제외한다.)

- 이혼,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친권자는 2명이지만 가정 폭력이나 양육 포기, 실종 등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친권자 한 명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

③ **미성년 후견인 ()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

④ **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하 '주된 생계유지자'라고 한다) (양친 등) 2명**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서 성인이 되기 직전인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변경이 없는 경우

⑤ **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주된 생계유지자) 1명**
· 학생이 미성년이지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지만, 주된 생계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가 1명이었던 경우
·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

⑥ **학생 본인**
·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유지자 중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학생 본인이 성인인 경우 등

비과세 세대인 경우는 (2)의 ①에서 ⑥까지, 또는 (3)①의 어느 하나에 체크

<확인 사항> 다음 사항에 동의하시는 경우 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급부 신청만)

고등학생등취학지원금 신청(신고)으로 입력한 보호자 등의 개인번호나 제출한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사용하여 수입 상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다음의 이유로 (1) 또는 (2)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 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유지자 중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미성년이며 “도부현민세 소득할” ·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될 정도의 수입이 없으므로

【5】誓約・委任欄 ※ 신청자의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위임)합니다.

신청자 성명 **神奈川 育夫**

<비과세 세대, 생활보호 수급 세대 공통>

- 이 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는 가나가와현교육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그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 가나가와현 이외의 도도부현에 고등학생등장학금부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임소시설 조치비(견학여행비 또는 특별육성비(모자생활 지원시설의 고등학생 등은 제외))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수업료 이외에 학교에 납부하는 납부금 등에 미납분이 있을 때는, 제가 지급 받는 고등학생등장학금부금을 그 미납분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 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자가 서명하십시오. 서명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세대만>

- 본인의 세대는 7월 1일 현재※, 생활보호법(1950년 법률 제144호) 제36조 규정에 의한 생업부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인 고등학생 등이 전공과에 재학하는 경우는 제외)
- ※ 신입생 대상 일부 조기급부의 첫 번째 신청은 4월 1일 현재
- 【2】 “부양 친족 등의 상황에 대하여” 난에 기입한 고등학생 등 및 형제자매를 본인이 부양하고 있습니다.

<学校使用欄>

次のことについて確認しました。

<学校受付印>

학교에서 사용하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学校の名称

学校長の氏名

職印